

## 도서관과 저작권법

윤 선 영 \*

〈목 차〉

- |            |            |
|------------|------------|
| 1. 여는 글    | 4. 변화된 도서관 |
| 2. 저작권의 개념 | 5. 닫는 글    |
| 3. 저작권의 제한 |            |

### 1. 여는 글

우리는 농경사회에서 인간이라는 주어진 정보매체를 가지고 가장 원초적인 정보의 전달 방법에 의해 의사소통을 하면서 기기의 발달과 함께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왔다.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를 거쳐 탈산업사회로 부터 정보화사회로 까지 과학 기술의 발달에 의한 기기의 첨단화로 대변혁을 하였다. 정보화사회는 정보가 사회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보를 접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의 보편화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도서관에도 변혁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변혁은 도서관에 입수되는 자료의 유형도 그리고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도 변화를 가져오도록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은 정보의 다양화와 대량화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이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그 기능도 역할도 확장되면서 시대적인 흐름에 부응하여 적절한 개념으로 자리를 굳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정보의 생산, 이용의 대량화와 함께 정보의 축적 및 제공은 물론 이용자에 대한 정보관리자의 역할도 변화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는 대부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규제하는 저작권법이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의문의 여지가 없다.

---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 2. 저작권의 개념

일찌기 18세기 부터 시작된 인간의 지적활동에 대한 보호방안은 지적내용을 기록하는 매체의 발달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여 왔다.

인쇄기술의 발명은 저작물을 오래 보존하고 널리 배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인류 역사에서 특히 출판사의 발달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이 대량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질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저작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변화되는 사회에서 출판업자들은 보다 많은 저작물이 창작되고 출판되어 널리 배포됨에 따라 지적 내용을 창작한 저작자(개인)의 명성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해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면서 저작권법이 비롯 되었다. 즉,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작자의 명예를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소유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보호방안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는 저작권의 보호에 대해서도 점차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적 내용에 대한 보상, 다시 말해서 창작성에 대한 보호가 지적 노력의 댓가를 저작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저작권 즉, 저작자가 갖는 권리는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moral rights)과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economic rights)으로 구분된다. 저작인격권은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저작자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인 반면에, 저작재산권은 법적으로 양도할 수 (저작권법 제41조)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창작성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대가를 받는 권리로서 정당한 대가를 받게되면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도 동시에 존중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권리를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보호해 주고자 제정한 저작권법이란 저작자, 실연가의 보호를 도모하고, 저작물 등의 문화적 산물의 공정 이용을 도모하며,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법에 의해 인정받을 수 있는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그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 저술된 모든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법에 의해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저작물은 다음 세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될 때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해 낸 의미형상 그 자체이기 때문에 첫째,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로는 창작물로서의 독창성이 있어야 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셋째로는

다른 사람이 감지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표현되어 있어야만 저작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요건을 갖춘 저작물은 어떤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에 따라, ① 어문 저작물, ② 음악 저작물, ③ 연극 저작물, ④ 미술 저작물, ⑤ 건축 저작물, ⑥ 사진 저작물, ⑦ 영상 저작물, ⑧ 도형 저작물, ⑨ 컴퓨터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예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작물로서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7조는 일반적 요건을 갖춘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그 용도로 보아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할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에 명문화 된 저작물은 비보호 저작물이라고 정의하여 저작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사용을 위한 허락을 얻지 않고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의 대상이 되도록 저작권법에 명시한 비보호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① 법령, ②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장심판 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⑥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비공개로 한 법정, 의회의 연설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와같은 기본 개념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지적저작물이 종래의 개념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을 만큼 다양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적활동의 산물에 대한 보호의 폭을 넓혀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종래의 저작권법은 문화적 성격을 띤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면서 주로 복제권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과학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뉴미디어나 소프트웨어의 출현은 기존의 법체계를 멀티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체제로 재정비할 준비를 하고 있다.

### 3. 저작재산권의 제한

우리 나라는 구한말에 선진문물의 도입으로 인쇄가 민간에서 행해지기 시작하자 1908년에 한국저작권령에 의하여 일본 저작권법이 한국에 의용(衣用)되면서 비로소 우리 나라의 저작권제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1957년에 이르러서야 최초의 우리 나라 저작권법이 제정, 공포 되었다. 이 법이 시행된 후의 우리 나라는 급격한 국력신장에 따라 사회, 문화의 양상도 변모하였으며, 신문, 방송, 출판, 음반 기타 저작권산업 또한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되자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적으로 저작권법의 개정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국제무역의 활

성화와 함께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대외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1986년 말에는 저작권법의 전면 개정이 단행되었다. 개정 저작권법은 국제적 보호수준에 균형되도록 체제와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그 해 10월 1일을 기하여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에 가입하므로써 동협약에 가맹한 외국의 저작물에 대하여도 내국인과 동등한 보호를 부여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 후 우리 저작권법은 1994년 1월 7일에 부분개정을 하였고 1995년 1월 1일에는 WTO협정의 부속협정인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WTO/TRIPs)의 체약국이 되었다. 1995년 12월 6일에 또 한 번의 부분개정을 단행하였으며, 1996년 7월 1일부터는 저작권에 관한 정통적인 국제규범이라 할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체약국이 되어 동맹 외국의 저작물을 소급 보호하므로써,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저작권제도의 국제적 주류를 타고 인류문화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우리의 저작권제도는 현재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정보화사회에서 멀티미디어의 사용과 함께 복잡해진 저작권 적용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가 변화하고 저작권법도 그 변화에 부응하여 개정, 보완되고 있지만, 저작권법은 이용자가 저작자에게 저작물을 사용할 때마다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허용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 허용범위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사용을 '공정 사용'(fair use)이라고 하는데,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고 11종의 특례를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하여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어느 경우에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면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 중에서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는 조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제23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1)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제82조 제1호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한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이나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1. 7.)

#### [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 영화, 신문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및 도서, 문서, 기록 그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1.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 [제30조] 점자에 의한 복제

(1) 공표된 저작물은 앞을 못보는 사람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할 수 있다.

(2) 앞을 못보는 사람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녹음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8조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 (복제를 할 수 있는 시설)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제3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하는 것도 동 시행령 제4조 (앞을 못보는 사람들을 위한 녹음이 가능한 시설)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 시행령 [제3조] 복제를 할 수 있는 시설

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특수도서관을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 문서, 기록 그밖의 자료를 보존, 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도서, 문서, 기록 그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 [제4조] 앞을 못보는 사람들의 이용을 위한 녹음이 가능한 시설

법 제3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시각장애인 재활시설.
  - 나. 점자 도서관.
  - 다. 장애인 요양시설과 장애인 근로시설 중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교육법 및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시각장애인의 교육, 학술 및 연구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작권법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1항에 의거하여 우리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환경은 정보 관리자나 이용자가 이와같은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그저 막연하게 공공기관에서의 사용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생각이 저작물을 복제와 인용에 의한 방법으로 쉽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사용은 그 허용범위와 제한 기준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멀티미디어의 사용이 증가되는 정보화사회에서도 여전히 저작물의 공정 사용을 명문화하여 비영리 목적이고 교육적인 용도로는 허용할 것이다.

#### 4. 변화된 도서관

우리 사회가 정보의 물결에 휩쓸려서 고도정보화사회로 까지 진입하게 되는 환경은 도서관에도 그 영향을 끼쳐서 커다란 변혁을 일으켰다. 문서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던 도서관의 기능은 사회의 변화와 문화의 발전으로 그 역할이 더해 가면서 공공을 위한 봉사의 범위도 그 방법도 달라졌다. 이와같은 도서관의 발전을 전통적인 도서관의 세대, 도서관 내의 업무 전산화를 이룬 도서관 자동화 세대,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의 교환이 가능한 전자도서관 세대와 같이 크게 3세대로 구분하기도 한다.

제 1세대는 전통적인 도서관으로 (paper library), 고대, 중세부터 발명되어 왔던 여러 종류의 분류법과 1879년대에 창안되었던 듀이십진분류법(DDC)의 세대로, 각각의 도서관에서 개성적인 사서가 모든 업무를 수행하면서 존경받던 시대이다. 제1세대 도서관은 전통적인 개념을 연상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기기의 사용이 일반화 되기 이전의 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제 2세대는 전통적인 도서관 기능이 전산화된 도서관으로 (automated library),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된 컴퓨터 혁명으로 변화를 가져온 세대라고 할 수 있으며 MARC의 출현과 온라인 정보검색시스템 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MARC와 온라인 정보검색 시스템에 의한 규격화, 분업화, 동시화, 집중화, 극대학, 등이 이루어지고 기계화의 환경이 이루어져가는 시대이다. 제2세대 도서관은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사용으로 업무의 전산화를 비롯하여 LAN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이용 세대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제 3세대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공을 초월한 정보교환이 가능한 전자도서관의 세대로 (digital library), 전자출판 및 전자적 유통에 의해 쉽고, 개성적이며, 창조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된 환경 즉, 디지털화 된 시대를 의미한다. 제3세대 도서관은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으로 CD-ROM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는 등 정보의 입수, 관리 및 제공 등이 전자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의 도서관이라 하겠다.

이런 과정에 의해 변화된 도서관은 현재 전자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전자화되어 운영되는 도서관이라 할 수 있으며 결국 전자화되는 환경의 기본 조건은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활용과 무선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정보가 구비되어야 한다. 전자도서관이란 모든 것이 전자화되어 운영되는 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3단계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도서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관리 및 이용을 위한 과정들이 기계화되어 있고, 수집되는 정보매체의 형태가 인쇄물만이 아니라면 이런 환경도 초보적인 전자도서관 (electronic library)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단계로는 기관내에서 이용자가 자기 책상에 앉아 도서관에 있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가능한 수준이 된 것이다. (on-line system, computerized) 세번째 단계로는 관련기관끼리의 연계로 자신의 책상에 앉아 다른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다. (networked system, digitised) 1980년대에는 전자도서관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1990년대에는 디지털 도서관 (Digital Library)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도서관이란 도서관 본래의 기능인 정보의 수집, 축적, 관리, 제공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구현하고,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 시스템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도서관의 특징은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축적하고, 이용자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디지털 도서관으로의 변모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즉,

- 1) 디지털화 하는 비용이 서고의 공간확장 비용보다 저렴하다.
- 2) 전자적인 정보서비스의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보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신속하

고 편리하며 효율적이다.

3) 전자매체 형태의 정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영향이 전자도서관 구축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정보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전자도서관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방대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2) 개별적이고 다양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신속, 정확, 편리하게 만족시킬 수 있다.
- 3) 대량의 정보를 디지털화 하므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4)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접근과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다.
- 5) 고품질, 고수준의 정보검색을 지원할 수 있다.
- 6) 디지털화된 정보를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 7)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 8)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다.
- 9) 첨단화 된 컴퓨팅 기술과 통신기술을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
- 10) 전자출판의 발달로 첨단화된 정보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정보의 축적 및 전달 매체가 디지털화 되고 있으며 이런 변화는 정보이용의 효율성과 극대화라는 측면도 있으나 정보의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그것은 디지털화 된 정보는 복제가 쉽고, 복수자에게 전송이 가능하며 다수자와 접근이 쉽고, 수정 또는 가공이 쉬우며 더 나아가 단편화되기 쉽고 다른 정보와 합성하기도 쉽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량의 정보가 축적되고 변형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자 사이에서 유통되는 것이 일반화되는 사회에서 사실상 저작권자가 최종 이용자의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멀티미디어 사회에서는 이용자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자신의 창작행위를 위한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때문에 권리처리가 대단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무단으로 이용하여도 권리자가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종래의 저작물에 비해 관리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 5. 닫는 글

멀티미디어 시대의 성장기라고 하는 20세기의 말미에서 우리는 정보의 디지털화 더 나아가 도서관의 전자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도서관은 지식의 보고로서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존하고 관리하여 인류사회의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이제는 사회의 변화만큼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다. 도서로 대표되었던 지식군(자료)을 보존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던 도서관은 정보화사회에서 정보 요구자가 정보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정보제공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기능이 확대 되었다. 고도정보화사회에서 도서관은 정보 안내 또는 정보 중개를 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보매개센터로 달라져야 하고, 정보관리자는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로를 제시해주는 정보안내자 또는 정보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정보관리자는 정보제공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이용자의 다면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양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사서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다시 말해 정보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에 있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도 디지털도서관 시대에 정보중개자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고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업무로 부각되고 있다.

## 참 고 문 헌

1. 이상정,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계간 저작권, 35:75-83, 1996.
2. 장순결, 박덕영 “디지털 도서관에 있어서 저작권에 관한 고찰.” 주간기술동향 700:281-296. 1995.
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편. 著作權 用語 解說. (1988)
4. 장인숙. 저작권법 원론. 서울, 보진제, 1996.
5. 전영표. 정보사회와 저작권. 서울;법경출판사,1993.
6. 허희성, “著作權의 保護 對象은 內容이 아닌 表現形式이다.” 계간 저작권, 24:50-54, 1993.
7. 名和小太郎, “現代の 著作權 問題と その 環境.” 人文學と情報處理, No.5:3-7, 1995.
8. 半田正夫, “マルチメディア 時代の 著作權.” 情報の科學と技術, 45(6):254-259, 1995.
9. 北村行夫, “マルチメディアと 知的所有權.” 情報管理 38(11):1029-1038, 1996.
10. 山本隆司, “ネットワーク社會における 著作權 問題.” コピライト, No.425:2-19, 1996.
11. 山地克郎, “デジタル 技術が 著作權に 與える 影響.” 人文學と情報處理 No.5:52-57,

- 1995.
12. 日本圖書館協會, "圖書館と著作権" 圖書館年鑑, 1994:127-129.
  13. Bennett, Scott. 1995. "The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Computers in Libraries 14(5):18-20.
  14. Bernstein, Robert J. 1993. "Copyrights in the New Age of Interactive Multimedia." IEEE Comm. Magazine Dec.:60-62.
  15. Kurlantzick, Lewis. 1994. "Harmoniz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EIPR 16(11):463-464.
  16. Leonard, P. G. 1995. "Beyond the Future ; Multimedia and the law." Information Online & On Disc 95:91-110.
  17. Mecher, Heather J. 1994. "Multimedia and Copyright." Rutgers Computer & Technology Law J 20(1):375-414.